영국의 경찰 · 학교 연계제도에 관한 소고 (Police Schools Liaison Scheme)

-에이본 앤드 섬머셑 경찰청을 중심으로- (Avon and Somerset Constabulary)

박 기 남
(경찰청 외사과)

Ⅰ. 글 머리에

영국 경찰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43개, 스코틀랜드에 8개, 북아일랜드에 1개등 총 52개의 독립 경찰청(Constabulary)들에 의해 치안 유지가 되고 있다. 여기서 '독립'이란 첫째, 경찰권의 행사가 정치권의 영향력으로 부터 격리되어 있으며, 둘째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며, 셋째 52개의 경찰청들이 서로 상하관계를 갖는 것이 아닌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런던 경시청의 장은 런던 경시청의 최고 책임자 일 뿐, 영국 경찰 전체의 운영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해서, 영국경찰이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의 전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경찰의 운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기본적인 자치경찰의 모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극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 할 만하다.

첫째, 경찰예산의 구성을 보면, 51%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49%는 지방재원에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각 경찰청은 중앙정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치안 주무부서인 내무장관(Home Secretary. 영국에는 법무부가 따로 편제되어 있지 않음)은 주로 전직 경찰청장 출신으로 이루어진 '왕명 경찰 감사관(Her Majesty's Inspectors of Constabulary)'으로 하여금 각 경

찰청의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때는 중앙정부예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둘째, 내무장관은 공문(Home Office Circular)에 의해 경찰 정책에 관하여 각 경찰청에 조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언 사항들은 효율성 감사시 좋은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광역성 범죄수사를 위한 '권역 범죄수사대(Regional Crime Squad)', 범죄정보의 전산화 및 공동사용을 위한 'National Computer Centre', 'National DNA Data Bank', 다중범죄 진압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National Repoting Centre' 등의 출현들도 지방자치 경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위에서 영국의 경찰 · 학교 연계제도(Police Schools Liaison Scheme)를 살펴 보도록 하자. 경찰 · 학교 연계제도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찰관이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건전한시민의식의 함양'과 '동의에의한 경찰활동'[Policing by consent]의 철학을 가르치고 범죄예방 등에 대한 조언을 하며, 학원폭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린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찰활동을 뜻한다.

본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첫번째 부분은 경찰 · 학교연계제도의 찬성 · 반대의 일반론을, 그리고 두번째 부분은 그 효과성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찬 · 반 양론의 역사적 고찰

1. 발전적 측면

1829년 로버트 필경(Sir Robert Peel)에 의해 창설된 근대 영국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제압하는 등의 통상적 경찰임무외에도, 오늘날 영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다음과 같은 영국경찰 특유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 경찰은 누구든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하며, 언제든 비상시에는 위급성의 경중을 떠나 구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They have by long tradition a duty to be friend anyone who needs their help, and they may at any time be called upon to cope with minor or major emergencies."

경찰 · 학교 연계제도의 연원은 1951년 리버풀 경찰에 의해 도입된 경찰 · 청소년 연계제도[Police Juvenile Liaison Scheme]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64년 당시의 리버풀경찰청장은

그 제도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평화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특히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경찰써비스는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을 돕느데도 커다란 역학을 하여야 한다. ..... 본질적으로 어린이들은 악하지 않으나 부모들의 정신적, 도덕적 본보기의 결핍과 성장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확고함의 부재로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의무감의 자각으로 1951년 리버풀 시 경찰은 경찰·청소년 연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리버풀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의 급격한 감소와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계속적인 낮은 범죄율증가로 인하여 리버풀 경찰의 새로운 시도는 굉장한 성공으로 평가 받았다.

초창기 경찰·청소년 연계제도가 현대적 경찰·학교 연계제도로 탈바꿈하고 조직적으로 발전하게된 계기는 1980년대 초반에 영국의 곳곳에서 준동했던 흑인들의 폭동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1981년 4월에 시작되어 근 4개월간이나 계속되었던 브릭스톤 폭동(Brixton Riots)은 정치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정부는 스카만 경(Lord Scarman)으로 하여금 그 진상을 조사하고 개선안을 보고토록 하였다. 스카만 보고서의 대부분은 흑인 지역사회와 경찰간의 긴장관계를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부수적으로 경찰의 학교내 활동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경찰의 학교내 활동 -그룹 토의, 경찰관련 수업, 교통안전 강의 등을 통한-은 이미 광범위해졌다. 본인은(Lord Scarman)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러한 경찰의 활동을 환영하고 장려하기를 바란다. 명백히 경찰의 학교내 활동에는 제한요소들이 있다. 예를들면, 경찰이 단지 어린이들을 심문하기 위해 학교구내에 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질서있는 사회의 기본원리를 교육시킴에 있어서 경찰의 조력은 커다란 힘을 발휘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속히 변해가고 그 긴장도가 증폭되어가는 사회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을 정부가 일해 나가고, 법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회적 책무와 시민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스카만 보고서의 영향으로 1983년 경에는 경찰·학교 연계제도는 영국내 타지역 경찰까지 보급되었으며, 같은 언어권인 미국, 영연방 국가는 물론 유럽 대륙, 태국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 시기부터는 경찰·학교 연계제도에 관한 이론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갔으며 1983년에 발행된 교육부의 보고서는 그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① 어린이들로 하여금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케하고 사회적 책임성 을 일깨우는데 기여한다.

② 학교, 청소년 회관 등 교육기관내의 범죄예방을 촉진한다.

③ 경찰 및 그 관련기관인 법원, 교도소 등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촉진 시킨다.

④ 어린이들에게 도로나 가정내 또는 놀이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 험－예를들면 교통사고, 화재, 유괴등－ 으로부터 자신 또는 친구들 을 보호할 수 있는 기법 등을 가르친다.

이렇듯 경찰의 청소년 보호 및 선도책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경찰 · 학교 연계제도는 1986년의 교육법 개정으로 더 큰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즉, 동법은 '학생들을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추며 법을 존중하도록 교육시킬 의무가 학교에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 이사회와 학교장의 하여야 할 일들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학교이사회와 학교장은 커리큘럼을 구성함에 있어,

① 경찰의 학교내의 활동이 그들의 책임과 관련됨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② 학교와 지역사회간 특히 경찰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학교 이사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 지를 서술하여야 한다.

나아가 1986년 교육법의 개정법인 1988년의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은 '학교 교과과정은 균형이 잡히고 풍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과과정이 다음의 요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학생의 정신적, 도덕적, 문화적, 신체적 발전을 도모하고

② 학생들로 하여금 성인 생활의 책임감, 간접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인의 인터뷰 도중에 만났던 한 학교연계 경찰관은 교육법이 경찰 · 학교 연계제도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 사회적 도덕교육(Personal Social Moral Education－PSME)이 국가 교과과정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장학관들에 의해 감사를 받을 때는 PSME는 중요한 점검대상이 됩니다. 학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 몇 몇 학교들은 '우리들은 PSME 를 실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찰관들이 와서 애들을 가르치니까요'라고 답변하곤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8년 3월 교육부의 '학교 훈육 실태에 관한 조사위원회'(The Committee of Enquiry into Discipline in Schools)가 펴낸 보고서는 경찰 · 학교 연계제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확대 보급되도록 학교장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2. 비판적 측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1년 리버풀 경찰에서 시도된 경찰 · 학교 연계제도가 긍정적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고 확산된 것만은 아니었다. 어떠한 문제점들을 노정시켰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979년 블레어 피치(Blair Peach)라는 백인 교사가 런던의 할렘가인 핵크니(Hackney) 지역에서 백인우월주의 반대데모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핵크니 교사연합(Hackney Teachers' Association) 으로 하여금 '경찰과의 비협조'라는 노선을 취하도록 만들었다. 동연합에의해 출판된 팜플렛에는 경찰에 대한 비난이 가득하다.

"현 사회에서 경찰이 다른 어떠한 그룹보다 학교에서 5인조 축구, 디스코, 도로안전, 법 또는 심지어 '낯선 사람 안 따라가기' 등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내 경찰 활동이 커리큘럼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데, 그들의 진정한 숨은 동기는 '통제와 정보수집'에 있다. 경찰의 인종차별주의가 확인된 만큼, 경찰의 학교에의 접근은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경찰이 학교내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

1982년 '인종과 교육문제(Issues in Race and Education)'라는 잡지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이 사용하는 교재 등을 조사한 후 경찰 · 학교 연계제도에 대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경찰의 학교내 활동에 대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① 법집행 : 특정범죄 또는 용의자에 관한 증거모집, 증언청취, 탐문 등의 형사활동

② 정보활동: 특정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실태에 관한 일반 자료수집.

② 아동교육: 도로안전 교육, 유괴예방교육등.

④ 홍보활동: 어린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경찰의 이미지를 개선.

심지어 1983년 '교육 자문 센터(Advisory Centre for Education)'의 보고서는 학교내 경찰활동의 잘못된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경찰 · 학교 연계제도를 교육활동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고도의 감시활동(High profile surveillance operation)'으로 혹평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은 1985년 전국교사연맹 런던내권지부(Inner London branch)에 의해 주도된 '학교에서의 경찰 추방대회(The police out of schools campaign)'로 이어졌다. 학교내 활동으로 경찰이 학교, 학생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하면서, '어린이가 부모의 부재중 학교에서 사복형사들에 의해 체포되거나, 경찰에 의한 인종차별적 언어사용' 등의 인권침해와 결부되는 사례들을 적시하고 있다.

나아가 경찰의 학교내 활동을 거부하는 경우도 생겨나, 콕스 남작(Baroness Cox)은 국회 상원에서 '22개 학교가 경찰의 교내활동에 대한 위촉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음'을 적시하면서 '이는 자신들과 경찰의 역할구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안되었던 교사들이 너무 많았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결 론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경찰의 학교내 활동에 대해서는 찬 · 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반대의견들이 1988년 이전에 제기되었다는 점과 1988년의 교육개혁법의 제정으로 영국정부가 간접적이나마 경찰 · 학교 연계제도를 장려하려 했다는 점에서, 경찰 · 학교연계제도를 둘러싼 찬 · 반 양론의 오랜 싸움에서 경찰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찰 · 학교연계제도의 체계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많은 경찰 학자들로 하여금 그 효과성의 계량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Ⅲ. 효과성에 관한 논의들

1. 골디스 경정(Superintendent Goldies)의 모델

그레이트 맨체스터(Great Manchester) 경찰의 골디스 경정은 경찰참모대학(Bramshill Police Staff Police College) 고급간부과정에서 행한 발표에서 성공적인 경찰 · 학교연계제도를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경찰의 학교활동에 개입하기에 앞서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교육계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다양하고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사춘기인 중학생(Secondary School)기에 기존 질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항이 시작되며, 특히 경찰조직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기 쉬우므로 이러한 학년군을 집중공략 하여야한다.

④ 경찰 · 학교 연계경찰관은 명석, 신중 하고 지식이 높으며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는 학생, 교육관계자,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내의 회의감이나 반감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⑤ 경찰 · 학교 연계경찰관은 적정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히 교육관련 전문가로 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

⑥ 경찰 · 학교 연계경찰관들에 대한 지원－예를 들어 각종 교재, 인사고과등－ 이 이루어져야 한다.

⑦ 경찰 · 학교 연계제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평가에는 각 관련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골디스 경정의 모델이 각 경찰청들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이유는, 앞서 전술한 지방자치 경찰의 특징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43개 경찰청 중의 하나인 '에이본 앤드 섬머ㅅ 경찰청(Avon and Somerset Constabulary)'지역에서 실시되었던 경찰 · 학교 연계제도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실험들을 살펴 보고자한다.

경찰 · 학교 연계제도를 위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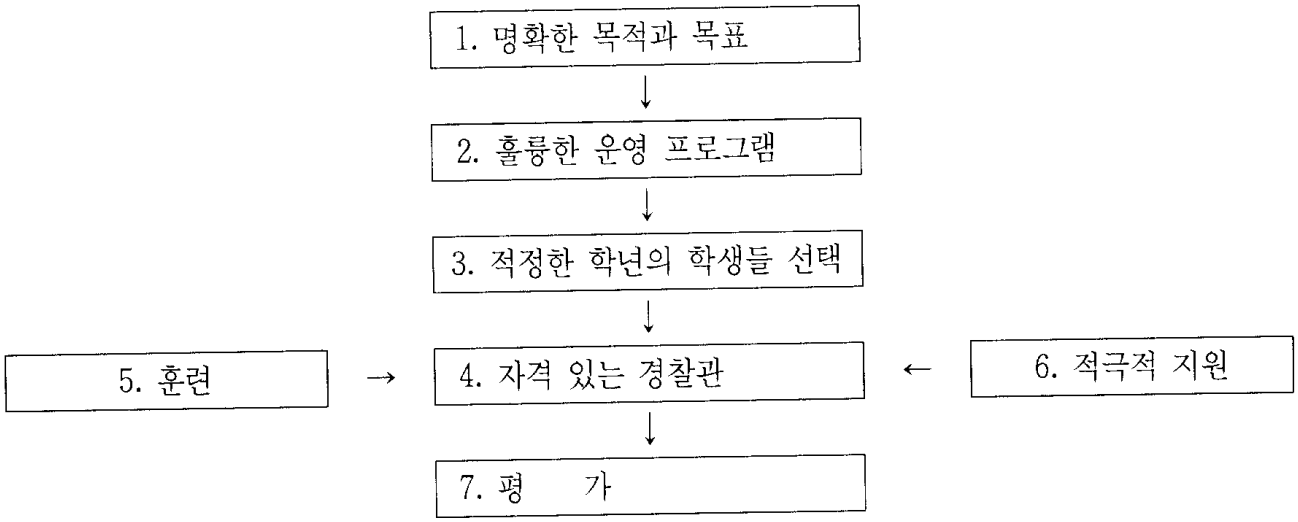

2. 홉킨스, 휴스톤, 한찌의 공동연구

1988년 2월 부터 1년 동안 홉킨스 등의 학자들은 내무부의 의뢰로 에이본 앤드 섬머셑 경찰청에서 경찰 · 학교 연계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당시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16명의 전종 경찰관들에 의해 경찰 · 학교운영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도 에이본 앤드 섬머셑 경찰청 본부에 있었다. 조사는 경찰 · 학교 연계제도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학생 1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기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중점 평가 대상은 '학생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 · 학교 연계제도에 참가한 학생들은 경험, 관찰, 토의 등을 통해, 학교 연계경찰관들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질 것이며 이는 곧 그들이 가질 수도 있는 경찰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생들은 전체 경찰관들 보다는 학교연계 경찰관들에 대해서 훨씬 높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

②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연계 경찰관들을 일반경찰의 전형으로 생각하는 데는 실패함으로써 그 효과가 상쇄하고 있다.

③ 경찰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찰에 대한 호감도 등이 급속히 저하되었다.

④ 경찰이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춘기인 14-16세의 학생들'에 초점을 맞춘(Targeting) 것은 적절하다.

⑤ 따라서 경찰측의 보다 현실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태도 전환이라기 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계속적 퇴행을 방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3. 홉킨스의 보강 실험

홉킨스는 전술한 수량적 기법의 조사를 보강하기 위하여 동일 지역에서 81명의 14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기법으로써 경찰 · 학교 연계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홉킨스도 학교연계제도의 목적을 '경찰관과 학생들간의 우호적이고 비공식적 접촉을 통한 우호관계의 수립'에 있다고 이해하는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다.

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경찰관상은 '경찰력의 행사(the exercise of police power)'로 인식되고 있으나 학교내에서 접하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이와는 다른 친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② 학생들은 학교연계 경찰관을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는 다른 임무-예를 들면 사회복지 운동가- 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③ 따라서 어린 학생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학교연계 경찰관제

도를 통하기 보다는 어린이들이 길거리 등에서 자주 접하는 일반경찰관들의 태도 변화를 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4. 에이본 앤드 섬머셀 경찰의 반응

가. 조직 재정비

상기 전술한 실험결과는 경찰로 하여금 경찰·학교 연계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게 만들었다. 1992년에는 조직 재정비(Force Reconstruction)가 있었는데, 그 작업을 담당했던 팀들은 '경찰·학교연계제도를 하부조직인 경찰서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권고하였다. 그 결과 11개 경찰서가 경찰·학교연계제도에 관한 각기 다른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경찰청 단위의 조정과 통합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제 11개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경찰·학교제도는 크게 3가지 모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학교연계 제도에 대한 책임이 지역담당 경찰관(Community Beat Officer-CBO)에 있는 경우이다. CBO란 일정 구역을 배정받아 도보순찰을 하며, 범죄 신고 등에 응하며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경찰관들을 의미한다.

둘째는 경찰서 본부에 1명의 학교연계담당 전종 경찰관을 두어 그로 하여금 고학년 학생들을 담당하게 하고, 저학년들은 전술한 CBO들로 담당하게 하는 2분화된 형태이다.

세번째 형태는 경찰서 본부에 근무하는 2-3명의 지역사회 담당 경찰관(Community Affairs Officer-CAO. 이들의 주된 임무는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 범죄예방 유관기관들과의 업무조정과 협조등으로서 우리나라 방범계 근무자와 유사함)은 고학년들을, CBO들은 저학년 학생들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위의 세가지 경우 모두에 공통되는 사항으로서는 학교연계 경찰관들을 위한 전문교육이나 교육용 교재등이 제공되지 않았고, 아울러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는 점이다.

나. 실험결과에 대한 반론

본인의 인터뷰 대상이 되었던, 직·간접적으로 경찰·학교 연계제도에 관여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한결 같이 홉킨스 박사 등의 연구에 불만을 표출시켰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되

는데, 그 첫째는 에이본 앤드 섬머셑 경찰내에서 실시 되었던 두가지 실험의 공통된 가설이 '경찰 · 학교 연계제도의 목적은 경찰 · 학생의 관계개선'에만 초점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대분분의 경찰관들이 학교에서의 경찰관의 존재로 인하여 '교내폭력(Bullying)이 사라졌다거나, 강력사건 해결시 많은 도움을 받았거나' 하는 등의 실제적 체험담을 얘기했다. 그중의 한 여자 전종 학교연계 경찰관의 회고에 따르면, "16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런던으로 소풍을 간적이 있는데 수상관저를 견학하게 되었어요. 저는 수상관저를 지키고 있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저는 브리스톨에서 학생들을 인솔하고 온 경찰관인데 수상관저 대문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나요 ?'라고 물었죠. 그 경찰관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모두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우리 일행은 금속 탐지기를 지나게 되었는데 아! 글쎄, 삐하는 소리가 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해보니 학생들 중 7명이나 칼을 휴대하고 있지 뭡니까. 그 경찰관이 우리에게로 다가와서는 '이게 뭡니까?'하고 농담스레 얘기하는데, 학생들 전부하고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학생들이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남들한테 '수상관저 앞에서 칼을 휴대하고 있다가 잡혔다'고 얘기하는 대신, '우리는 다우닝가 10번지(Downing Street 10)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노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인이 다된 그 애들은 아직도 가끔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우리가 다우닝가 10번지에 갔던 일 생각나세요?'라고 묻곤 합니다.

두 번째의 반발 논거는 경찰의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정 자체의 어려움이다. 한 CAO는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학교연계 제도의 효과를 설명한다.

"오늘날 마약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 입니다. 마약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국제기구들 및 각국의 국내기관들이 수 십, 수 백억원 대의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문제는 여전히 세계적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의 마약 억제 정책이 세계 여러 곳 곳에서 수십 키로의 헤로인, 코카인 등등이 압수되고 있듯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경찰의 학교 연계제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판단하며, 저는 홉킨스 박사같은 심리학자들이 뭐라 얘기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장 명확한 효과성 측정 방법은 경찰이 학교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중지시키고 나서 그 전후의 청소년 범죄양상 이라든지, 어린이들의 준법의식, 경찰관에 대한 친밀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가정은 경찰 내부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학교연계제도의 효과성을 피부로 실감한 학교장들의 적극적 만류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 대안의 모색

인터뷰 도중에 만난 한 경찰관은 홉킨스 등의 연구결과 발표이후 에이본 앤드 섬머셑 경찰의 학교연계제도가 크게 위축되었고, 그결과 '목표의 특정화, 전문경찰관의 선발 및 교육, 교육용 교재의 준비, 평가'등 성공적인 학교연계제도를 위한 각종 여건이 미비해 졌다고 판단, 그나름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는 소위 '마약 저항교육(Resistance In Drug Education-RIDE)'이라는 프로그램으로서, '경찰관과 교사 공동에 의한 교재개발 및 공동강의, 마약문제 중심으로의 목표 특정화, 연령별 교육내용의 차별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의 관할구역의 16세어린이들 중에서 약 44%가 마약에 실험적으로 손대고 있으며 이는 범죄문제에 직결된다는 연구결과에 착안 RIDE 프로그램을 시험운영 하게 되었다. RIDE 프로그램은 5세-15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령군에 따라 3가지의 상이한 교재로써 가르치게되는데 12세-15세 용의 교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세-15세용 RIDE 프로그램

강의번호	강 의 내 용	담 당 자
1	개인 안전(Personal safety)	경찰관
2	사회에서의 마약사용(A drug using society)	〃
3	사회에서의 마약남용(A drug abusing society)	〃
4	범죄의 위험성과 파급효과(The risk and consequences)	경찰관과 교사공동
5	나의 신체. 응급처치(My body. Dealing with Emergencies)	교사
6	동료간의 압력(Peer pressure)	〃
7	언론과 광고(The media and advertising)	〃
8	마약의 대체물들(You have a choice alternatives to drugs)	〃
9	스트레스의 자각과 대응법 (Stress-How to recognize and deal with it)	〃
10	자기애(Self esteem)	〃
11	극기(Being assertive)	〃
12	권리와 의무(My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13	누구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 있나 ?- Who can I turn to?	〃

위 도표에서 보듯 12-15세용 RIDE 프로그램은 13편의 강의로 구성되는데 처음의 3강의는 경찰관에 의해서 4번째의 강의는 경찰관 · 교사 공동으로, 그리고 나머지 9시간의 강의는 교사에 의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강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RIDE 프로그램은 마약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도 '범죄예방교육,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준법정신, 교내 폭력의 해악성' 등의 메시지도 전달할 뿐아니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법 집행과 같은 갈등 상황이 아니므로- 학생들과의 관계증진 등의 부수효과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담당 경찰관에 따르면 약 2년여의 시험간을 거친후, RIDE 프로그램의 전 에이본 앤드 섬머셑 경찰에로의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한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의 경찰 ·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첫째, 범죄예방(Crime prevention)에의 과감한 투자이다. 벌써 1951년 부터 리버풀 경찰의 학교 연계제도를 시발로, 80년대 말 에이본 앤드 섬머셑 경찰에서 전종 학교연계 경찰관을 16명으로 운영했던 점에서 그 중요성의 인식정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영국인 특유의 실험정신이다. 홉킨스 등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의 투입이 있으면 그에 대한 효과성이 얼마인지를 측정하고 있다. 셋째는 경찰관 개개인의 투철한 직업의식이다. 누구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RID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더불어 그렇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2년여 넘게 지켜 보고 그 확대 여부를 결정하려는 지휘부의 통솔력과 치밀성 또한 돋보인다 할 것이다.